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필기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전형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기존 4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면접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면접전형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기존 1~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기존 1~6급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기존 1~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기존 2~6급

※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증명서 혹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

### [유의사항]

※ 의사진단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http://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편의지원 신청자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관한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